

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

의안 번호	253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2. 1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, 「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하여 심의·의결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연도말 기금조성액: 2,065,664천원

(단위 : 천원)

2024년도 말 조성액 ㉠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액 ㉡ = ㉢ + ㉠
	수입 ㉢	지출 ㉣	증감 ㉤ = ㉢ - ㉣	
2,034,741	98,959	68,036	30,923	2,065,664

나. 변경내용

1)수입계획: 83,060천원 → 98,959천원(15,899천원 증액)

가)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: 67,000천원 → 67,400천원

나) 용자금회수 이자수입 증액: 2,560천원 → 2,680천원

다) 그 외 수입 증액: 2,300천원 → 27,779천원

라) 민간용자금회수 수입 감액: 11,200천원 → 1,100천원

마) 예치금회수수입 증액: 2,032,421천원 → 2,034,741천원

2)지출계획: 161,156천원 → 68,036천원(93,120천원 감액, 57.7%)

26 (제278회-예산결산위제2차부록)

가) 비용자성사업비(탈수급자 사회보험료) 감액: 7,200천원 → 4,080천원

나) 용자성사업비(용자금대여) 감액: 100,000천원 → 10,000천원

다) 예치금 증액: 1,954,325천원 → 2,065,664천원

※ 정책사업(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) 지출금액의 20% 이상 초과 변경하여
지방의회 의결

3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
나. 「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」

4. 붙임 :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